문서번호	시설안전팀-2149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8.04.18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부장	팀장	건설안전본부장
			04/18
김상현	임재근	정우철	김숭호
협 조			
감 사			

# 2018년 화재예방 종합대책 추진계획(안)

## 2018. 4.



## 2018년 화재예방 종합대책 추진계획(요약보고)

## Ⅰ 추진 방향

- □ 유통인 사용시설 책임 강화
- □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- □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
- □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

## Ⅱ 화재 발생 현황

□ 화재 발생 현황( 11년 이후, 화재 원인별)

구	분	계	′ 11	′ 12	′ 13	′ 14	′ 15	′ 16	′ 17	화재원인별 비율
전	기	12	1	1	2	1	1	5	1	
담병	<b>냇불</b>	4					2	1	1	방화
시설	변경	1						1		4% 원인미상 13%
가	스	2						2		시설변경 전기 52%
방	화	1		1						4% 담뱃불 18%
원인미상		3			1		1	1		
75	1)	23	1	2	3	1	4	10	2	

#### Ⅲ 문제점 분석

- □ 유통인 사용시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다수 차지
- □ 담뱃불 화재 요인 등 유통인, 시장이용고객의 무책임한 행동
- □ 휴일 등 휴장기간 다수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문화 미정착

## Ⅳ 주요 추진과제 - 4개분야 / 27개 세부 추진계획

#### ① 유통인 사용시설 책임 강화

- ① 입주자 내부시설 공사 안전관리 철저
- ② 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개정 추진 개선
- ③ 도매시장법인 화재예방 순찰 강화
- ④ 법인 화재예방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속 시행

#### ②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
- ① 전사적 화재예방 업무 추진 개선
- ② 상황실과 통합안전센터 간 통합근무체계 구축 개선
- ③ 자회사 통합근무 시행 개선
- ④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확대 개선
- ⑤ 위기 상황 매뉴얼 개선 개선
- ⑥ 재난안전관리 실무추진반 활성화
- ⑦ 유통인 참여 가락시장 안전지킴이 활성화
- ⑧ 시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

#### ③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

- ① 도매권 취약지구 화재위험요소 점검용역 시행
- ②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시행
- ③ 상시안전점검반 운영
- ④ 소화기 일제점검 및 추가 설치 개선
- ⑤ 노후시설 적기보수 개선
- ⑥ 취약지구 내 지능형감지기 설치 추진 개선
- ⑦ 확산소화기 설치 및 열감지기 작동온도 프로그램 수정 개선
- ⑧ 방재차량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추진 개선
- ⑨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<mark>개선</mark>
- ⑩ 방재차량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추진 개선

#### ④ 입주자 화재예방 안전의식 고취

- ① 간담회 및 소방교육 실시 개선
- ② 소방훈련 실시
- ③ 찾아가는 소방교육 실시
- ④ 시민안전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
- ⑤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

## 2018년 화재예방 종합대책 추진계획(안)

대형화, 복합화, 노후화에 따른 화재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점검, 노후시설 개선, 교육, 훈련, 홍보, 순찰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가락시장을 만들기 위함

## I 2017년 주요 성과 및 반성

- 1 주요 성과
- □ 전년도 대비 화재 발생 80% 감소
  - 전년도 대비 화재발생 2건으로 감소(16년 10건 → 17년 2건)
- □ 재난종합훈련 및 예방교육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
  - 가락몰 개장 이후 최초 침수대비 훈련 포함 합동소방훈련 실시
    - 16년 2회 → 17년 4회
  - 교육용 연기 소화기를 활용하여 유통인 곁으로 찾아가는 소방교육 실시
    - 16년 2회 → 17년 3회
  -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확충(15~17년 146명 양성)
  - 전직원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재난안전교육 강화
-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간담회, 방송, 영상, 포스터를 통한 홍보 강화
  - 공사, 유통인, 송파소방서 합동 캠페인 실시(16년 2회 → 17년 4회)
  - 계절별 간담회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및 성과 포상(16년 2회 → 17년 4회)
  - 가락몰 빌딩안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매뉴얼 영상 표출
  - 가락몰 내부 피난안내도 및 재난행동매뉴얼 포스터 제작·설치

□ 휴장기간 취약시간 화재예방 순찰강화 ○ 통합안전센터 근무자(가락몰, 4회/일), 자회사 시설관리 근무자 (도매권, 10회/일+가락몰, 2회/일) ○ 대학생 순찰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지구 순찰강화 □ 재난전문가 확대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자문 강화 ○ 재난전문가(송피소방서 예방과장)확대로 자문 강화(6년 3명 → 17년 4명) ◯ 도매법인 화재예방 추진실적 평가 개선으로 화재예방 기여 ○ 자발적 또는 공사합동 화재예방활동 적극 참여로 화재발생 건수 감소 □ 유관기관 업무협업을 통한 상호 유대관계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 ○ 공사&송파소방서 업무협약 체결. 공사&송파소방서 핫라인 구축 ○ 민·관·군경 합동 길터주기 카퍼레이드 적극 동참(4차례) ○ 화재 시 신속 출동지원을 위한 위치표시 안내판 부착(채소동) □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및 자체 점검 강화 ○ 도매권 소방종합정밀점검 강화(1회/년→2회/년) ○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(채소. 청과. 수산시장) ○ 자체 상시안전점검반 운영으로 취약시설 화재위험요소 사전조치 (1.527개점포 1.803건 조치완료) □ 노후시설 적기보수 및 시설 확충으로 선제적 화재예방 ○ 제2주차건물 1층 소화설비 보완공사 외 7건 조치 완료

## 2 화재 발생 현황

## □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(11년 ~ 17년)

(단위: 백만원, 건)

구 분	계	′ 11	′ 12	′ 13	′ 14	′ 15	´ 16	′ 17
발생건수	23	1	2	3	1	4	10	2
재산피해	112.7	0.30	19.00	26.20	0.30	0.85	49.05	17.00

※ 단순 차량 화재는 제외

### □ 분야별 주요 화재발생 원인(11년 ~ 17년)

구	분	계	′ 11	′ 12	′ 13	′ 14	′ 15	′ 16	′ 17	화재원인별 비율
전	기	12	1	1	2	1	1	5	1	
담병	냇불	4					2	1	1	방화
시설	변경	1						1		4% 원인미상 13%
가	스	2						2		시설변경 전기 52%
방	화	1		1						4% 담뱃불 18%
원인	원인미상계				1		1	1		
7			1	2	3	1	4	10	2	

#### □ 문제점

- 유통인 사용시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다수 차지
- 담뱃불 화재 요인 등 유통인, 시장이용고객의 무책임한 행동
- 휴일 등 휴장기간 다수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문화 미정착

- □ 2016년 대비 화재발생이 80%로 감소하였으나, 전기적 요인과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, 시 장이용고객의 안전의식 부재, 유통인 사용시설 부주의
- → 유통인 사용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
- → 입주자 내부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강력시행
- → 법인 화재예방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
- → 금연, 화재예방 홍보 등 공사, 유통인, 소방서와 함께하는 캠페인 강화
- → 법인, 중도매인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, 훈련, 긴담회를 개최하여 인전의식 강화
- □ 화재.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실 보고 미흡
- → 상황실과 통합안전센터 간 통합근무 체계 구축으로 소통 강화
- → 위기 상황 매뉴얼 개선으로 화재 사고 시 상황실 신속 보고
- □ 전사적 화재예방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내부위원의 확대 필요
- → 유통인과 관련된 내부 부서 위원들을 추가로 확대하여 재난 의견 발굴과 화재예방 관심 유도
- □ 법적 소방종합정밀점검 및 화재위험요소 내·외부 점검 강화
- → 상·하반기 2회 점검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단·중기 조치 강화
- → 취약지구 내 화재위험요소 외부 점검용역 및 자체 상시안전 점검반 운영으로 선제적 화재예방 관리
- □ 노후시설 적기 보수,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- → 수산동 소화설비 보완공사 등 투자사업의 신속집행
- → 취약지구 내 지능형감지기, 확산소화기, 감지기 작동온도 프로그램 수정 등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- → 화재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방재차량 전용 주차구역 지정

## Ⅱ 2018년 추진 과제 및 추진 계획

## □ 기본 방향

- 유통인 사용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 화재 예방 및 재발 방지
- 노후시설 개선, 안전점검 강화 등 예방 인프라 확충
- 교육, 훈련, 홍보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

추진 과제		추진 계획
유통인 사용시설 책임강화		<ul> <li>■ 입주자 내부시설 공사 안전관리 철저</li> <li>■ 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개정 추진</li> <li>■ 도매시장 법인 화재예방 순찰 강화</li> <li>■ 법인 화재예방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속 시행</li> </ul>
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개선		<ul> <li>전사적 화재예방 업무 추진</li> <li>■ 상황실과 통합안전센터 간 통합근무체계 구축</li> <li>■ 자회사 통합근무 시행</li> <li>■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확대</li> <li>■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</li> </ul>
	7	<ul> <li>■ 재난안전관리 실무추진반 활성화</li> <li>■ 유통인 참여 가락시장 안전지킴이 활성화</li> <li>■ 시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</li> <li>■ 도매권 취약지구 화재위험요소 점검용역 시행</li> <li>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시행</li> </ul>
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		<ul> <li>● 상시안전점검반 운영</li> <li>● 소화기 일제점검 및 추가 설치</li> <li>● 노후시설 적기보수</li> <li>● 취약지구 내 지능형감지기 설치 추진</li> <li>■ 확산소화기 설치 및 열감지기 작동온도 프로그램 수정</li> </ul>
		<ul> <li>■ 방재차량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추진</li> <li>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</li> <li>■ 화재예방순찰 강화</li> <li>■ 간담회 및 소방교육 실시</li> </ul>
생활속 안전문화 확산		<ul> <li>▼ 소방종합훈련 실시</li> <li>■ 찾아가는 소방교육 실시</li> <li>■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</li> <li>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실시</li> </ul>

## Ⅲ 세부 추진 계획

## 1 유통인 사용시설 책임 강화

#### ① 입주자 내부시설 공사 안전관리 철저

- 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공사 시 기술검토 및 승인, 공사 감독 철저
- 시공업체 공사 전 방재센터 방문 안전관리 교육 및 확인서 징구
- 미승인 공사 및 불법공사 시 시설물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시행

### ②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추진(기 시행) 개선

○ 피난통로 기능유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

위반 사항	77) 77	처분기준					
ਜਦ <b>ਮਿ</b> ਲ	근거 규정	1차	2차	3차			
9. 구조, 설비, 피난통로 등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	제30조 제9호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시설사용제한 10일			

○ 난로, 선풍기, 전열기기 등을 켜놓은 상태로 퇴점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근거 마련

위반 사항	근거 규정	처분기준				
기원 <b>가</b> 명		1차	2차	3차		
19.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	제33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
○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거하여 즉시 경고 조치 및 기한 내 미 조치 시 행정처분 강력시행

#### ③ 도매시장법인 화재예방 순찰 강화

- 목 적 :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실행방안 중 화재예방 전담인력 배치 여부 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순찰 강화
- 법인 관리구역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순찰 강화

- 취약시간대 법인 전담인력 구성 화재예방 순찰 강화

#### ④ 법인 화재예방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속 시행

- 목 적 : 법인 관리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업무 추진 유도
- 시설안전관리 자격자 전담인력 상주 배치 지속 점검
  - 업무분야 : 시설물 안전관리, 소방(화재예방) 분야
  - 전담인력 기준 요건 : 소방 또는 전기 분야 자격증 소지자 1명 ※ 자격 :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 5년 이상

## 2 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
### ① 전사적 화재예방 업무 추진(시행 중) 개선

- 목적 : 유통인 및 시설관련부서 화재예방 전사적 추진
- 내용
  - 관련부서 담당구역별 화재예방 홍보 실시(시설안전팀 합동), 취사행위 단속
  - 모닥불 및 담뱃불 등 단속 실시(완료)
  - 화재 발생 시 관련팀장 및 담당 비상 근무(유통인 현황 파악 등) ※ 관련부서: 유통물류팀, 농산팀, 수산팀, 임대관리팀, 환경교통팀, 시장개선팀



### ② 상황실과 통합안전센터 간 통합근무 체계 구축(기 시행) 개선

- 목적 : 화재,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실 즉시 보고 체계 구축
- 내용
  - (기 존) 상황실과 통합안전센터 간 벽 구획으로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소통 미흡
  - (개 선) 벽체 철거 후 자동문(투명강화유리문) 설치로 소통 강화



- 상황실은 당초 홍보관람을 위한시설로 붙박이 유리창 및 방화셔터 설치
- 통합안전센터와의 용도별 구획
  - 화재 시 화염 및 연기 확산 방지
  - 소화용 질소가스 방출 시 상황실 질소가스 확산 우려

### ③ 자회사 통합근무 시행(기 시행) 개선

- 목 적 : 화재,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
- 내 용 : 휴일, 야간 근무 시 파트별(기계,전기,소방,전기,건축,토목,통신) 자회사 근무를 통합 감시,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신속 현장 대응
  - (기 존) 방재실 근무자 1명
  - (개 선) 방재실 근무자 2명(방재실 1명 + 통신실 1명)
    - · 1단계 통합근무 시행 : 방재실+통신실/건축실+토목실
    - · 2단계 통합근무 시행 : 통합사무실 개선공사 후 시행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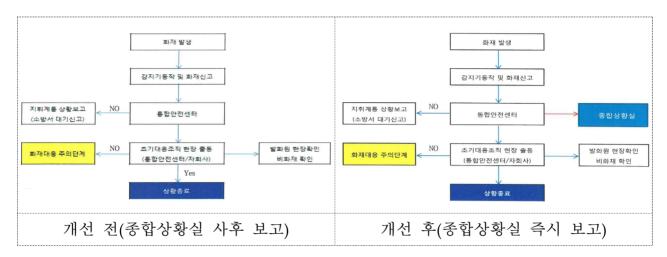
#### (4)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확대 개선

- 목 적 : 내·외부 위원 재난의견 발굴, 자문강화로 재난 선제적 대응
- 내용: 내부위원 4명 추가 확대(농산팀, 암대라리팀, 환경교통팀, 시장개산팀)
  - (기 존) 내부(3명), 외부(8명), 전문가(4명)
  - (개 선) 내부(7명), 외부(8명), 전문가(4명)

### ⑤ 위기 상황 매뉴얼 개선(기 시행) 개선

○ 목 적 : 화재 사고 발생 시 상황실 신속 보고

○ 내 용 : 경미한 화재, 소방서 미 출동 화재 시에도 신속 보고토록 매뉴얼 개선



#### ⑥ 재난안전관리 실무추진반 활성화

- 재난안전관리 실무추진반 정기적 운영으로 유통인 관련부서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전사적 안전관리 추진
  - 년 2회 상. 하반기에 실무추진반 개최
  - 화재 및 재난사고 시 실무추진반 수시 개최하여 자문 및 전사적 안전관리 구축 ※ 실무추진반 : 시설관리 및 유통관리부서 12개팀 부장급

#### ⑦ 유통인 참여 가락시장 안전지킴이 활성화

- 가락시장 안전지킴이 활성화로 공사·유통인 협업체계 구축 및 유통인 안전사고 예방 경각심 고취
  - 안전지킴이 교육 강화 등 질적 성장 유도
- 안전지킴이 포상(상품권) 지속 추진
  - 화재 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신고 시 5만원
  - 화재 진화 보조자 등 사항에 따라 5만원 지급
  - 화재 진화 기여자 10만원

#### ⑧ 시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

○ 목 적 : 겨울철 등 취약기간 안전관리 대책 중점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

○ 시 행 : 4회/년 이상[봄철·겨울철·명절(설, 추석) 등 취약기간]

○ 내 용 : 화재예방 홍보, 간담회, 안전점검 등 중점 추진

### 3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

#### ① 도매권 취약지구 화재위험요소 점검 용역 시행(기 시행)

- 목 적 : 외부전문업체 점검에 의한 화재위험요소 사전발굴 제거 하여 선제적 화재예방 관리
- 내용
  - 점검기간 : 18. 1. 18 ~ 2. 9. 점검구역 : 청과. 수산동
  - 지적사항결과 법인, 조합별 책자 발행 및 책임 부여 관리
  - 기한내 조치완료 및 미조치 시 경고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
  - 입주자 점포 상시안전점검 하반기 추가 실시로 화재경각심 고취
  - 여름철 및 겨울철 냉·난방 기기 전원 점검 집중 순찰 실시

#### ②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시행(시행 중)

- 가락몰과 도매권역에 대한 점검시기를 통합하여 상·하반기 연 2회 실시
  - 상반기(18. 3. 2 ~ 4. 30.), 하반기(18. 9. 1 ~ 10. 31)
- 상주점검원 배치로 법적점검사항 및 자체안전점검의 내실화 및 품질확보

#### ③ 상시안전점검반 운영

- 내 용 : 입주자시설 화재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처리
- 점검반 : 5명[통합안전센터(총괄) 2명, 자회사(소방분야) 3명]
- 상시안전점검반 추진 계획

차수	점검 일정	점검 대상	비고
 1차	1월 ~ 3월	청과시장, 수산 시장	완료
 2차	5월 ~ 7월	건어물종합상가, 임시매장, 식품종합상가	
 3차	8월 ~ 9월	전 시장 요식업소	
4차	11월 ~ 12월	채소 시장	

### ④ 소화기 일제 점검 및 추가 설치(기 시행) 개선

- 목 적 :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법제화에 따른 교체 및 추가 설치
- 내용
  - 화재위험요소 일제점검 및 소방종합정밀점검에서 소화기 전수점검
  - 청과관련시장(舊다농구역) 공용소화기 추가 설치(<mark>완료)</mark>

#### ⑤ 노후시설 적기보수(기 시행) 개선

- 목 적 : 도매권역내 노후 소방시설을 적기에 보수 및 보완하여 예방 및 대응
- 사업 내역
  - 수산동 소화설비 보완공사
  - 청과동 소화배관 노후열선 교체공사
  - 수산동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수공사
- 사업기간 : `18. 1 ~ 6.

## ⑥ 취약지구 내 지능형 감지기 설치 추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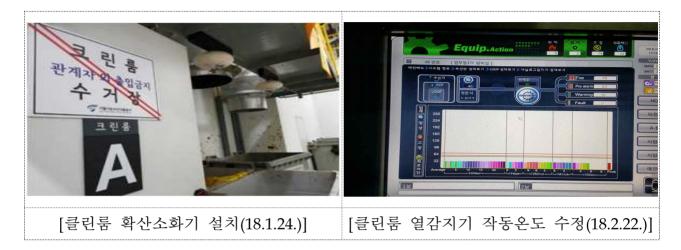
- 목 적 : 기존 선로구축이 필요했던 유선방식의 감지기 대신 무선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여 취약지구 내 화재 예방
  - 청과관련시장(舊다농구역) 시범설치 후 확대 검토

#### ② 확산소화기 설치 및 열감지기 작동온도 프로그램 수정(기 시행) 개선

○ 목 적 : 화재발생 우려가 큰 가락몰 판매동 클린룸내 확산소화기 설치로 화재확산을 방지하고, 열감지기 작동온도를 수정하여 화재에 신속 대처

#### ○ 개선 내용

- 가락몰 판매동 클린룸 확산소화기 설치(7개소)
- 가락몰 판매동 클린룸 열감지기 작동온도 수정 $(80^\circ C)$  →  $70^\circ C$



### ⑧ 방재차량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추진(기 시행) 개선

○ 목 적 :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주차구역

지정 및 주차가드 설치

○ 장 소 : 통합안전센터 및 방재 자회사 주차구역



### ③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선

○ 목 적 : 소방화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습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

○ 기 간 : 18. 4. 25.(수)~27.(금) / 3일간

○ 장 소 : 대구EXCO 실내외 전시장

### 10 화재예방 순찰 강화 개선

- 내용 : 동절기 취약시간대 토요일 오후 ~ 일요일 오후 순찰 추가(21회)실시
  - 토요일, 일요일 및 휴장시간에 화재 발생으로 취약
  - 취약시간대 외부인력인 대학생을 적극 활용 예방순찰 강화

ユㅂ	4월 ~	10월	11월 ~ 3월		
구분	평일	주말	평일	주말	
횟수	3회	15회	4회	34회	

### 4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

### ① 간담회 및 소방교육 실시(시행 중) 개선

- 목 적 : 안전관리 책임자 등 유통인들의 안전의식 고취
- 대 상 : 공사 임직원, 법인 및 조합 소방안전관리자, 안전지킴이, 유통인
- 시 행 : 3회/년 이상 개최
- 내 용 : 화재예방 당부사항 공유, 안전사고 예방 의견 토론,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실시
  - (기 존) 전 임직원 대상 내부 직원 자체 교육
  - (개 선) 재난·재해전문 외부강사 초빙 교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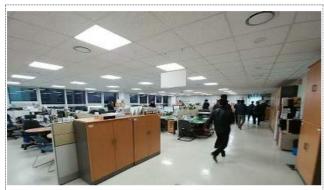
#### ② 소방종합훈련 실시(시행 중)

○ 목 적 :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유통인 관심 유도

○ 대 상 : 전 시장

○ 참 가 : 공사 임직원 및 소방서, 법인 합동 실시

○ 시 행 : 2회/년 이상 실시





[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(18.3.21.)]

[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(18.3.21.)]

## ③ 찾아가는 소방교육 실시

○ 목 적 : 영업으로 인한 소집 교육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 교육 실시

○ 대 상 : 법인, 조합, 자회사, 다중이용업소 등

○ 시 행 : 2회/년 이상 실시

○ 참 가 : 해당 안전관리자, 점주, 종업원 등

○ 방 법 : 교육용 소화기 사용 점포 순회 소방교육 및 대피 요령 교육

#### ④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(시행 중)

○ 목 적 :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유통인 관심 유도

○ 대 상 : 전 시장

○ 참 가 : 공사 임직원 및 소방서, 법인 합동 실시

○ 시 행 : 4회/년 이상 실시



#### 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실시

○ 목 적 :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체험교육 실시로 사고 대처 능력 배양

○ 대 상 : 공사, 자회사, 법인 등 시설관리 담당 직원

○ 주 관 : 서울시 소방재난본부(현장대응팀)

## Ⅳ 행정사항

### □ 전사적 화재예방 업무 추진

- 모닥불 및 담뱃불 등 단속 실시
- 화재 발생 시 관련팀장 및 담당 비상 근무

※ 관련부서: 유통물류팀, 농산팀, 수산팀, 임대관리팀, 환경교통팀, 시장개선팀

- □ 유통인 화재예방 교육 : 임대관리팀, 농산팀, 수산팀 협조
  - 유통인 집합교육 시 화재예방 교육 협조(교육 시간 : 10 ′)

붙임 1. 시설물운영운영관리규정(위반자 처분기준) 1부. 끝.

#### 붙임 1)

#### 위반자 처분기준(제35조 관련)

이네. 기청.	77 77	처분기준				
위반 사항	근거 규정	1차	2차	3차		
1.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	제9조 및 제10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2. 도매시장사용료, 시설사용료, 임대료 및 관리비를 2 회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	제14조 내지 제16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3. 도매시장사용료, 시설사용료, 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 근 1년 이내 3회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	제14조 내지 제16조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계약해지		
4.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사장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위 탁하였을 때	제19조 내지 제20조	계약해지	-	-		
5. 시설물에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	제21조	시정지시	경 고	-		
6. 사용중인 시설물을 무단으로 구조·용도를 바꾸거나 배관·배 선·칸막이 등 내부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가 미승인 시공시 나. 시공중 화재발생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	제24조	- 경 고 시설사용제한 15일	-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30일	- 계 약해 지 계약해지		
7. 사장의 승인없이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	제28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8. 사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·철거하였을 때	제30조 제7호	경 고	시설사용제한 10일	계약해지		
9. 구조, 설비, 피난통로 등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	제30조 제9호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시설사용제한 10일		
10. 입주자관리 시설중 화재위험요인이 있어 시정명 령에 불응한 때	제30조 제11호	경고	시설사용제한 10일	계약해지		
11. 입주자의 과실·부주의·관리태만 또는 승인용도 의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가. 2개 점포 이상 전소 또는 피해액 2.000만원 초과 나. 피해액 200만원 ~ 2,000만원 미만 다. 피해액 50만원 ~ 200만원 미만 라. 피해액 50만원 미만	제30조 제12호 제13호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5일 시설사용제한5일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0일	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15일		
12 삭제-						
13. 시설사용제한 조치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사용한 때	제30조	시설사용제한 15일	계약해지	-		
14. 교육훈련을 기피하였을 때	제31조	시정지시	경 고	-		
15. 집단행동을 하였을 때	제32조	시정지시	경 고	_		
16.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	제33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17. 사장의 중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	제33조	경 고	시설사용제한 10일	계약해지		
18. 관계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하였을 때	제34조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19.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	제30조 제17호	시정지시	경 고	시설사용제한 5일		

<sup>※</sup> 제11호의 화재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금액으로 하며, 화재 발생시 처분기준은 행위·피해금액 기준 중 상위 기준을 적용한다.

<sup>※</sup> 제19호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 한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.

<sup>※</sup> 시설사용제한 : 단전, 단수, 페문조치 등